

아시아

일본 JAPAN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일본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08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018
03. 비관세 장벽 현황	020
04. 수출 애로사항	032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035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6,278억 9,400만 달러(한화 약 851조 2,359억 원)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며 보합세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902,800만 달러(한화 약 257조 6,210억 원)로 전체의 30.3%에 해당함
 - * 채소류 시장이 1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육류(8.7%), 낙농품(4.9%), 과일 및 견과류(4.5%) 순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4,378억 6,600만 달러(한화 약 593조 6,149억 원)로 전체의 69.7% 차지
 - * 스낵류 시장은 전체의 40.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 뒤이어 편의식품(10.5%),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8.4%), 영유아용 식품(6.8%) 순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81,249.0	588,283.0	591,685.0	610,817.0	627,894.0	100.0	2.8
신선식품	174,454.0	176,925.0	178,316.0	184,477.0	190,028.0	30.3	3.0
- 채소류	67,250.0	68,090.0	68,510.0	70,760.0	72,770.0	11.6	2.8
- 육류	49,930.0	50,740.0	51,230.0	53,100.0	54,790.0	8.7	3.2
- 낙농품	27,910.0	28,390.0	28,720.0	29,810.0	30,820.0	4.9	3.4
- 과일 및 견과류	26,060.0	26,350.0	26,470.0	27,300.0	28,030.0	4.5	2.7
- 유지류	3,304.0	3,355.0	3,386.0	3,507.0	3,618.0	0.6	3.2
가공식품	406,795.0	411,358.0	413,369.0	426,340.0	437,866.0	69.7	2.7
- 스낵류	231,900.0	234,900.0	236,400.0	244,100.0	251,000.0	40.0	2.8
- 편의식품	60,380.0	61,310.0	61,860.0	64,070.0	66,070.0	10.5	3.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0,220.0	50,550.0	50,550.0	51,900.0	53,050.0	8.4	2.2
- 영유아용 식품	39,960.0	40,310.0	40,410.0	41,590.0	42,610.0	6.8	2.5
- 소스 및 향신료	20,040.0	20,200.0	20,240.0	20,820.0	21,320.0	3.4	2.4
- 스프레드 및 당류	4,295.0	4,088.0	3,909.0	3,860.0	3,816.0	0.6	△1.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55.70원(2022년 11월 23일, 매매기준을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Global Trade Atals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인구 1억 2,6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3% 감소함(2020년 전체 인구수 약 1억 2,650만 명)
 -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가 5,16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4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남녀비중은 균등한 편이며, 여성 인구수가 전체의 51.2%에 해당하는 6,452만 명, 남성 인구수 48.8%에 해당하는 6,153만 명으로 집계

- 2021년 가구수는 5,471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만 1,500달러(한화 약 2,915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0.6%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소비 규모는 5,690달러(한화 약 772만 원)로 약 26.5%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0.4% 감소한 수치임

-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4,981달러(한화 약 675만 원)로 전년 대비(3.1%) 증가
 - 신선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507.60달러(한화 약 204만 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30.3% 차지
 - * 채소류 소비액은 577.3달러(한화 약 78만 원)로 가장 높은 수준, 뒤이어 육류 434달러(한화 약 59만 원), 낙농품 244달러(한화 약 33만 원), 과일 및 견과류 222.4달러(한화 약 30만 원) 순
 - 가공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3,473.37달러(한화 약 471만 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69.7% 차지
 - * 스낵류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991달러(한화 약 270만 원)로 최고 수준, 뒤이어 편의식품 524.1달러(한화 약 71만 원),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20.8달러(한화 약 57만 원), 영유아용 식품 338.1달러(한화 약 46만 원) 순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복합적으로 보임
 - * 낙농품(0.4%), 육류(1.2%)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채소류와 과일 및 견과류, 육류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가공식품의 경우 소스 및 향신료(0.3%)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소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함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559.00	4,625.12	4,663.70	4,829.35	4,980.97	100.0	3.1
신선식품	1,368.21	1,390.88	1,405.59	1,458.53	1,507.60	30.3	3.4
- 채소류	527.40	535.30	540.00	559.50	577.30	11.6	3.2
- 육류	391.60	398.90	403.80	419.80	434.70	8.7	3.5
- 낙농품	218.90	223.20	226.40	235.70	244.50	4.9	3.7
- 과일 및 견과류	204.40	207.10	208.70	215.80	222.40	4.5	3.1
- 유지류	25.91	26.38	26.69	27.73	28.70	0.6	3.5
가공식품	3,190.79	3,234.24	3,258.11	3,370.82	3,473.37	69.7	3.0
- 스낵류	1,819.00	1,847.00	1,863.00	1,930.00	1,991.00	40.0	3.2
- 편의식품	473.60	482.00	487.60	506.60	524.10	10.5	3.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93.90	397.40	398.50	410.30	420.80	8.4	2.6
- 영유아용 식품	313.40	316.90	318.60	328.80	338.10	6.8	2.8
- 소스 및 향신료	157.20	158.80	159.60	164.60	169.10	3.4	2.7
- 스프레드 및 당류	33.69	32.14	30.81	30.52	30.27	0.6	△0.8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 식품	- 채소류	191.91	186.75	182.10	182.92	182.20	△0.4
	- 낙농품	79.38	78.18	77.13	78.19	78.51	0.4
	- 과일 및 견과류	33.73	32.44	31.28	31.05	30.88	△0.5
	- 육류	27.59	27.50	27.69	28.15	28.49	1.2
	- 유지류	5.41	5.28	5.16	5.22	5.22	0.0
가공 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09.48	107.04	104.74	105.71	105.54	△0.2
	- 스낵류	96.61	95.04	93.67	94.50	94.40	△0.1
	- 소스 및 향신료	59.69	58.87	58.16	58.92	59.10	0.3
	- 편의식품	27.85	27.16	26.54	26.80	26.77	△0.1
	- 영유아용 식품	19.65	18.77	17.99	17.91	17.65	△1.5
	- 스프레드 및 당류	7.67	7.08	6.63	6.39	6.13	△4.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91억 1,886만 6,000달러(한화 약 12조 3,624억 원)로 전년 대비 15.8% 증가
 - 주요 수출국은 중국(14.7%), 홍콩(14.6%), 미국(14.0%)이며, 對한국 수출액은 5억 4,671만 5,000달러(한화 약 7,412억 원)로 6.0% 차지
 - * 對중국 수출액은 13억 4,339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8,212억 원)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9.5% 성장
 - * 홍콩으로의 수출액은 13억 3,377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8,082억 원)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1.1%로 집계
 - * 對미국 수출액은 12억 7,973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7,349억 원)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8%의 성장률 기록
 -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 대상국 중 6위 규모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5,697,963	6,493,772	6,975,990	7,871,979	9,118,866	100.0	15.8	12.5
1 중국	658,622	730,277	932,377	1,162,959	1,343,399	14.7	15.5	19.5
2 홍콩	876,732	1,041,494	1,033,820	1,374,904	1,333,778	14.6	△3.0	11.1
3 미국	1,021,108	1,002,840	984,712	1,045,096	1,279,736	14.0	22.5	5.8
4 독일	168,854	339,219	589,225	788,360	921,783	10.1	16.9	52.9
5 대만	617,317	685,481	697,038	764,648	915,178	10.0	19.7	10.3
6 한국	547,029	656,956	518,940	447,722	546,715	6.0	22.1	0.0
7 베트남	182,201	231,361	245,359	289,085	323,649	3.5	12.0	15.4
8 싱가포르	198,179	210,031	233,576	233,120	312,168	3.4	33.9	12.0
9 태국	138,005	152,800	160,969	157,082	179,006	2.0	14.0	6.7
10 캄보디아	49,521	63,822	95,265	91,986	166,702	1.8	81.2	35.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의 수출액이 14억 6,168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9,816억 원)로 16.0% 차지, 다음으로 조제품 기타(13.1%),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4.8%) 순

* 주로 가공식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며, 신선식품 중 냉동 쇠고기(2.8%)가 2억 5,516만 8,000달러(한화 약 3,459억 원), 신선 쇠고기(2.5%)가 2억 3,093만 4,000달러(한화 약 3,131억 원)로 주로 수출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5,697,963	6,493,772	6,975,990	7,871,979	9,118,866	100.0	15.8	12.5
1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 혼합조제식품	853,653	950,064	1,201,366	1,403,990	1,461,684	16.0	4.1	14.4
2 조제품 기타	519,334	737,259	829,263	1,204,566	1,190,798	13.1	△1.1	23.1
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293,733	326,448	343,714	378,954	435,871	4.8	15.0	10.4
4 위스키류 (스카치, 버본, 라이 이외 기타)	121,498	135,825	178,217	254,055	421,732	4.6	66.0	36.5
5 기타 베이커리 제품	295,062	310,930	308,315	320,066	398,503	4.4	24.5	7.8
6 기타 발효주 (과실 발효주, 곡물 발효주 이외 기타)	174,678	209,413	222,504	233,911	375,414	4.1	60.5	21.1
7 쇠고기 (냉동/백 없는 것)	85,143	101,658	143,502	135,612	255,168	2.8	88.2	31.6
8 쇠고기 (신선, 냉장/ 백 없는 것)	85,615	121,840	128,800	135,947	230,934	2.5	69.9	28.2
9 사과(신선)	96,904	125,686	132,868	100,966	147,323	1.6	45.9	11.0
10 설탕과자류 (죽임껌, 감초엑스, 캔디류 외 기타)	110,039	127,526	130,194	112,130	134,445	1.5	19.9	5.1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총 639억 1,749만 5,000달러(한화 약 86조 6,529억 원)로 전년 대비 7.2%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미국(23.3%)이며, 뒤이어 중국(11.2%), 캐나다(6.9%), 호주(6.6%) 순
 - *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48억 8,139만 7,000달러(한화 약 20조 1,747억 원)로 전년 대비 15.8%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7% 기록
 - * 동중국 수입액은 71억 4,731만 달러(한화 약 9조 6,896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9억 7,969만 2,000달러(한화 약 2조 6,839억 원)로 전체 수입의 3.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4% 감소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57,371,112	60,469,412	60,603,043	59,645,330	63,917,495	100.0	7.2	2.7
1 미국	12,869,974	14,055,574	13,131,673	12,853,119	14,881,397	23.3	15.8	3.7
2 중국	6,794,579	7,218,187	6,872,102	6,715,946	7,147,310	11.2	6.4	1.3
3 캐나다	3,474,742	3,662,005	3,809,407	3,839,062	4,396,671	6.9	14.5	6.1
4 호주	3,957,899	4,244,362	4,090,927	3,691,412	4,244,762	6.6	15.0	1.8
5 브라질	2,568,947	2,944,921	2,752,089	2,858,641	3,340,688	5.2	16.9	6.8
6 태국	3,329,828	3,417,522	3,414,498	3,306,452	3,325,956	5.2	0.6	0.0
7 이탈리아	2,727,971	2,411,932	3,425,346	3,448,223	3,179,261	5.0	△7.8	3.9
8 한국	1,755,909	1,873,289	2,064,076	2,069,801	1,979,692	3.1	△4.4	3.0
9 프랑스	1,900,232	1,974,168	2,044,712	1,772,230	1,930,735	3.0	8.9	0.4
10 뉴질랜드	1,245,490	1,334,700	1,446,419	1,431,370	1,502,533	2.4	5.0	4.8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옥수수(7.4%), 냉동 돼지고기(3.6%), 기타 조제 저장 처리한 닭고기(3.5%) 등 신선 농축산물 위주
 - * 기타 옥수수 수입액은 47억 1,011만 6,000달러(한화 약 6조 3,855억 원)로 전년 대비 43.6%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1.3% 증가함
 - * 냉동 돼지고기의 수입액은 23억 3,188만 3,000달러(한화 약 3조 1,613억 원)로 전년 대비 1.4% 감소, 2017년 이후 연평균 1.6% 감소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57,371,112	60,469,412	60,603,043	59,645,330	63,917,495	100.0	7.2	2.7
1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팥콘용 이외 기타)	3,074,783	3,355,953	3,508,610	3,280,674	4,710,116	7.4	43.6	11.3
2 돼지고기 (냉동/기타)	2,492,027	2,460,517	2,654,832	2,365,841	2,331,883	3.6	△1.4	△1.6
3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2,249,055	2,414,513	2,419,553	2,229,371	2,246,276	3.5	0.8	0.0
4 쇠고기 (신선, 냉장/뼈 없는 것)	1,915,389	2,088,054	2,110,043	1,950,325	2,183,600	3.4	12.0	3.3
5 돼지고기 (신선, 냉장/기타/기타)	1,873,489	1,934,418	1,964,043	2,070,459	2,096,326	3.3	1.2	2.8
6 대두 기타 (기타)	1,547,628	1,543,000	1,534,071	1,489,711	2,068,021	3.2	38.8	7.5
7 메슬린 외 기타 (기타) *밀	1,461,831	1,574,326	1,415,010	1,451,256	1,698,934	2.7	17.1	3.8
8 저에루크산 유채씨 (기타) *채유종실	1,152,668	1,125,826	1,031,660	966,320	1,597,617	2.5	65.3	8.5
9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1,184,214	1,361,074	1,394,674	1,374,903	1,496,928	2.3	8.9	6.0
10 커피 (볶지 않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319,468	1,146,921	1,138,597	1,051,442	1,180,296	1.8	12.3	△2.7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일본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4억 2,209만 6,700달러(한화 약 1조 9,279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
 - 농산물 비중은 94%로 총 13억 3,719만 9,200달러(한화 약 1조 8,128억 원) 수출
 - 임산물은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3,899만 3,200달러(한화 약 529억 원)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2%의 감소율 기록
 - 축산물 수출 규모는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4,590만 4,300달러(한화 약 622억 원)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9% 증가율 기록

한국의 對일본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13,675.6	1,323,839.4	1,426,856.0	1,336,388.6	1,422,096.7	100.0	6.4	2.0
농산물	1,218,671.5	1,234,109.1	1,331,653.4	1,254,577.3	1,337,199.2	94.0	6.6	2.3
축산물	35,116.6	33,948.3	30,933.1	34,843.4	45,904.3	3.2	31.7	6.9
임산물	59,887.5	55,782	64,269.5	46,967.9	38,993.2	2.7	△17.0	△10.2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한국산 농식품은 기타 조제품(7.5%), 단고추(5.8%), 김치(5.6%), 라면(4.6%), 설탕과자류(4.4%) 등

* 단고추 및 설탕과자류 2개 품목은 전년 대비 수출 규모 감소세로 나타남

* 설탕과자 감소율은 △6.7%이며 단고추 감소율은 △5.1%로 나타남

* 김치 수출액은 8,012만 4,300달러(한화 약 1,086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큰 폭(12.7%)으로 상승함

한국의 對일본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13,675.6	1,323,839.4	1,426,856.0	1,336,388.6	1,422,096.7	100.0	6.4	2.0
1 조제품 기타	110,334.0	108,663.5	94,908.6	97,918.2	107,355.5	7.5	9.6	△0.7
2 단고추 (벨타입)	89,236.9	91,821.2	91,244.3	86,211.2	81,794.8	5.8	△5.1	△2.2
3 김치	45,567.2	56,103.6	55,184.4	71,099.1	80,124.3	5.6	12.7	15.2
4 라면	25,413.5	31,676.0	33,744.8	54,545.0	65,276.5	4.6	19.7	26.6
5 설탕과자류	77,853.4	69,030.7	69,851.7	67,146.4	62,668.9	4.4	△6.7	△5.3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 수입 신고함
 - 관세 관련 법령에는 주로 수출입절차에 관련된「관세법」「관세정률법」「관세 잠정조치법」이 있음
 - 수입신고는 필요사항을 기재한「수입(납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기본 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도착안내서, 운임청구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음
 - * 필요시 원재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사전신고서를 접수함
 - * 검사가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고 화물 도착 전 또는 반입 후 즉시 신고필증 교부
 - * 화물 도착 전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는 품목은 '수입신고 시 위생관리설명서가 제출되었고, 최근 1년 동안 식품위생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없으며, 해당 화물의 수송 및 보관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가공식품 제외)'이나 고추냉이, 버섯, 토마토, 파프리카, 대두유 등 후생노동성대신이 지정한 식품에 한함
- 수입신고 내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후 수입신고 제증명을 발행함
 - 일본에 수입되는 화물은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실시,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이 허가된 후에 화물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음
 - 수입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유독·유해 물질 함유 여부, 식품위생법 규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심사
 -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된 식물(과일 및 채소류 포함)의 수입검사 진행
 - *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은 폐기 처분함
 - 검사 확인 필요 화물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 식품위생법에 부합한 화물은 신고필증 발행
- 관세 납입 후 수입 물품을 반출함
 -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은 서류심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여 관세 등의 납부를 확인해 수입을 허가함.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관이라고 함. 통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물품이 국내에서의 유통을 인정받게 됨
 - 수입방법에 따라 통관절차는 다르며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의 관세법 제70조에서 말하는 「타법령」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함
 -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됨
관세는(CIF가격+가산요소*)×관세율, 소비세는(과세가격+관세)×소비세율로 책정
 - * 가산요소 : 수입항에서의 운송 관련 비용, 라이선스료, 무상제공하는 부재비 등

- 관세율은 관세정률법에 의거하여 분류된 품목별로 정해져 있음
- 품목분류와 원산국에 따라 기본세율, 잠정세율(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기본세율을 수정한 세율), 특혜세율(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 협정세율(WTO에서 정한 세율), EPA세율(경제제휴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간 정해진 세율) 등 적용

검역제도

- 판매 등의 목적으로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으며, 수입자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채소·과실 등 식물계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검역소에서,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동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음
 - 식물검역소와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과 그 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후생노동성의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후생노동성 검역소는 수입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유독·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지, 식품위생법의 규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함
 - 검역소는 필요한 경우 검사내용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함
 - 식품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포장용품 등이며, 신선 동물성·식물성 식품부터 가공식품, 기호식품, 건강식품, 알코올음료(주류) 등을 포함
 - * 수입신고 시 검역소는 서류심사, 물품검사 절차를 걸쳐 적합 여부를 판정함
 - * 적합 판정의 경우 검역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
 -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통관하거나,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함. 또는 폐기 처분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함
- 식물검역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 ①수입금지 품목 ②검사대상 품목 ③검사제외 품목으로 구분해 검역 진행하며,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음
 - * 수출업자는 식물류 등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검사 신청서와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함
- 동물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전염병의 국내 침입 방지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검역대상 품목(지정검역물)을 지정함
 - 동물검역대상 품목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검역증을 취득하거나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 육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열처리 사전 승인된 공장에 한해 수출 가능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타결 품목 없음
- 축산물
 - 열처리 돈육, 삼계탕, 유제품, 증제피혁분, 열처리 가금육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 속, 카네이션, 튤립
 - * 수출불가 품목(화상병 기주식물, 자두곰보병 기주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수출 가능
- 축산물
 - 개·고양이 사료, 우지, 돼지 콜라겐, 젤라틴, 비식용 돈피, 오징어 분말, 단미사료(계란분말), 계육가공품(멸균)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재식용 식물, 과실류, 절화류, 화분 등(단, 종자는 수출 가능)
 - : Malus속(사과 등), Pyrus속(배 등), Aronia속(아로니아 등), 비파(Loquat), 퀸스(Quince), 서양모과(Medlar), 모과(Pseudocycdonia sinensis), Amelanchier속(채진목 속), Choenomeles속(명자나무 등), Cotoneaster속(섬개야광나무 등), Crataegomespilus속, Crataegus속(산사나무속), Dichotomanthes속, Docynia속, Heteromeles속, Osteomeles속, Peraphyllum속, Photinia속(홍가시나무속), Pyracantha속(피라칸사 속), Sorbus속(마가목 등), Stranvaesia속
 - * 우리나라의 화상병 발생으로 '15. 6. 1일부터 상기 품목은 수출 금지됨

- 재식용, 생식물 포함/과실 및 종자 제외
 - : Prunus 속(복숭아, 뽕나무 등), Euonymus europaeus(유럽뽕살나무), Lycium barbarum(영하구기자), Ligustrum(쥐똥나무)
 - * 상기 품목은 자두곰보병 기주식물로 수출이 금지됨

• 축산물

- 말고기, 가금육·우모분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히로바(일본)
업체 유형	식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

- 깻잎, 고추, 애호박이 꾸준히 인기가 많고 과일 품목은 제철 과일이 인기 많음(여름 : 참외, 수박/겨울 : 알타리무/ 봄 : 나물 등)
- 가공식품 중에는 삼계탕 제품들이나 육개장, 갈비탕 등 RTE(즉석섭취식품) 식품의 인기가 높고 여름엔 냉면 제품도 잘 나감
- 코로나 이전에는 건나물, 삼계탕 재료, 옥수수 차, 한약 재료 등을 많이 수입했으나, 최근 로스팅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옥수수 차의 통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수입 절차 진행 중 규정이 바뀔 때가 있어 채소나 과일 등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을 수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1. SPS

주요 SPS 내용

- 일본 보건복지부는 2002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샘플링 검사 결과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잠재적인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식품, 식품첨가제, 조리기구, 용기와 포장의 생산과 판매, 특정 국가 및 지역 또는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2020년부터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성을 평가한 물질만 사용 가능함
 - 식품 첨가제로 많이 쓰이는 이산화규소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함
- 일본의 경우 건강식품에 대한 분류가 엄격하여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건강식품이 아닌 한방재료를 사용한 약품으로 분류하여 약사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 일본에서는 동 식품을 약사법에 의해 효능을 명시하여 약품으로 분류하므로 해당 식품은 약사법에 의해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함
-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고추, 깻잎 등의 신선 채소류가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문제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21년 2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추 등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재개정하였으며, 신선 고추에 적용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 바 있음
- 일본으로 특정 과일, 채소류의 공식 수입승인과 병해충위험평가 신청 시, 수출국은 2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1단계 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됨. 배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2015년 6월 2일부터 한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이 금지된 후 해제되지 않았으며, 복숭아의 수입도 제한됨
- 육류 및 가공육과 이들의 가공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 한국 내 검역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 및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가공육의 경우, 120℃에서 4분 이상 가열하여 통조림과 동등상태의 멸균조건 충족 시 검역 통관 가능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db.ffcr.or.jp/front/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7.html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_kikaku/index.html
	위험 식품의 미생물 기준 규정 (후생노동성-식중독(Food Poisoning))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syokuchu/index.html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대일 육류 및 가공류 제품 수출 시 위생증명서 첨부 요건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일본으로 수출한 돼지고기 스팸 제품이 한국검역 당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상에 필수 표시 문구가 기재되지 않아 통관 거부된 사례가 발생 육류 및 가공류와 이들의 가공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 내 검역 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 및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증명서(검역증) 상에는 제품 및 거래 관련 정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식품위생법 제9조 제2항) 제품정보 : 고기의 종류, 수량과 중량, 수출자 및 수입자, 도축 전후 검사 기관 및 검사 시행직원, 도축 시설 명칭과 위치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식품 : 가축(소, 말, 돼지, 양, 염소, 물소), 가공류(닭, 오리, 칠면조), 육류제품(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로스트 치킨, 훈제 쇠고기, 옥수수 쇠고기, 햄버거 스테이크, 미트볼 등), 우유 및 유제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열처리한 돼지고기, 열처리한 가공육, 삼계탕과 유제품, 멸균한 닭고기 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일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수한 위생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782

• 가금류 제품 수출 가열조건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한국을 조류 독감 발생 국가로 분류,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가금류 제품(육류, 내장 포함)의 대한민국 수입을 불허하고 있으나 '한일 가금육 가열조건 협약'에 의해 일부 승인된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해서는 수입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류 제품이더라도 삼계탕과 같이 120℃에서 4분 이상 가열하여 통조림과 동등상태의 멸균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기 조건과는 별개로 검역 통관이 가능함 • 가금육 가열조건 협약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일본 정부 농림수산성이 승인한 지정시설에서 가금육 및 가금육 제품 중심부의 온도를 70℃ 이상으로 1분 이상 열처리 방식으로 가열처리 - 사용되는 가금류는 도축 전 21일 이상 조류 인플루엔자(NAI) 등의 질병 발병이 확인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어야 함 - 대한민국 공인 검시자가 허가된 도축 시설에서 실시한 생체검사 및 사체검사 결과 모두 가금류 감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해야 함 - 대일 수출용 가금육 및 가금육 제품을 도축할 때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일본으로 수출할 가금육 및 가금육 제품의 전 처리(열처리 전 가공)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함 - 대일 수출되는 가금육 및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는 위생처리 공장 내용, 열처리 내용 등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일본 농림수산성 승인된 공장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샘플 정도의 소량이라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사전에 일본 정부의 열처리 공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787

• 식품첨가제 이산화규소 검역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식품첨가제로 많이 쓰이는 이산화규소(실리카)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규소는 식품에 고결방지제로 사용되는 실리콘과 산소의 천연화합물질 혼합물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 이산화규소를 식품 생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일 수출에서 일본의 기준치를 정확히 파악, 위반을 사전 방지해야 함 •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용제로 사용하는 첨가물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로 평균 입경이 15μm보다 큰 경우를 말함
통보일	2022.02.03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792

2. TBT³⁾

주요 TBT 내용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정 성분 또는 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 개정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8조에 따라, 식품 라벨링 표준이 부분적으로 개정됨
 - * 버펄로 원유가 "우유" 범주에 추가됨에 따라 식품 라벨링 표기법 일부 개정
 - * 농산물 피클의 측정 방법 개정으로 식품 라벨링 표기법 일부 개정함
 - * 쌀 제품 중 오래된 세척일 또는 도정일이 표기된 미판매 쌀의 물류/판매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라벨링 표준 부분 개정함
 - * 영양소와 에너지가 표준값과 동일할 때 '낮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 표준 부분 개정함
 - * 유전자 조작 제품의 라벨링 및 알레르겐 라벨링과 관련하여 유전자 변형 카놀라가 '특정 GM 제품'에 추가되도록 하는 개정을 제안함
 - * 사계 제조공정 및 품질에 대한 표시 기준 제정에 따라 제조일자 표시를 필수 기재 정보에서 자발적 기재 정보로 변경함
- 폐기물 분리 규정이 표시된 특정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지정 제품의 필수 표시 마크 규정의 일부가 개정됨.
- 플라스틱, 코팅, 첨가제 등 식품접촉물질의 사용 가능 목록이 추가 및 수정됨
- 동물성 유기농 가공식품과 동식물성 유기농 가공식품에 관한 표준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22년 일본 농업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유기농 알코올음료의 라벨 표시 요건이 시행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일본 소비자청(CAA)	https://www.caa.go.jp/en/policy/food_labeling/
JAS인증 스마일케어 인증	일본 농림수산성(MAFF)	https://www.maff.go.jp/

3)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원산지 • 수입자 정보 • 원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 • 순중량 • 유통기한 •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성분에 대한 표시 • 알레르기 정보 • 영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일본어로 표기할 것 폰트의 최소 사이즈는 8포인트로 할 것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몇 성분의 경우 용도와 같이 기입할 것 일반명이 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 사용할 것 (e.g. 비타민 C - Sodium L-ascorbate) 중량이 많은 첨가물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할 것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 대하여 작성할 것 산화 지방, 콜레스테롤, 당,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성분의 경우 작성자 임의로 추가 가능 함유량은 100g 또는 100ml 또는 1회분 또는 1포장 단위로 표기할 것	
	유통기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할 것	
	원료정보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복합재료의 경우 괄호 표기 후, 원재료를 표기할 것	
	보관방법	보관에 적절한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할 것 상온 보전 의의 유의 사항이 없을 시, 미표기 가능	
	수입자 및 제조자 정보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를 기재할 것	
	GMO 성분 표기	등록된 GMO 식품들인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원료를 함유하고 있음을 표기할 것	
	알레르기정보	새우, 계, 밀, 메밀, 달걀, 유제품, 땅콩 일본 소비자청은 다음 20개 항목에 대해서도 라벨에 표기하도록 권고 중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소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 복숭아, Yam(암), 사과, 젤라틴	
	순중량	단위는 g(또는 kg), l(또는 ml)로 기재할 것	
	원산지	일본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재료 별 원산지 정보 기재 의무 미적용	
	기타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JAS마크 표기 및 유기농 표기 가능 건강증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담당 부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한 후, 특정보건용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마크의 표기와 적절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 문구 사용 가능	

* 자료 : 일본 소비자청(CAA),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KATI농식품수출정보

• 커피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커피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인퓨전(브라질산 커피콩) - 덱스트린 - 커피콩 파우더 - 커피 오일 	
내용량	23g	
상미기한	제품 뒷면에 기재	
보존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AT 로지스틱스, 일본	
제조지(원산지)	일본	
유통기한	2022. 05	
출시일(발행일)	2021. 07. 28	
영양성분표시	에너지(칼로리)	6kcal
	단백질	0.1g
	지방	0.01g
	탄수화물	1.4g
	염화당량	0.01g

• 식물성 음료(대체 유제품)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유제품, 식물성 음료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캐나다 또는 미국) - 설탕 - 가용성 섬유소 - 겨기름 - 천일염 -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 점도제(셀룰로오스, 다당류 점도제) - 유화제 - 향료 												
내용량	200ml												
출시일(발행일)	2022. 0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키코만 톤요 인로(Kikkoman Tonyu Inryo)												
영양성분표시(100g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td> <td style="text-align: right;">114kcal</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백질</td> <td style="text-align: right;">3.9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td> <td style="text-align: right;">4.8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콜레스테롤</td> <td style="text-align: right;">0.0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염화당량</td> <td style="text-align: right;">0.38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칼륨</td> <td style="text-align: right;">199mg</td> </tr> </tbody> </table>	에너지	114kcal	단백질	3.9g	지방	4.8g	콜레스테롤	0.0g	염화당량	0.38g	칼륨	199mg
에너지	114kcal												
단백질	3.9g												
지방	4.8g												
콜레스테롤	0.0g												
염화당량	0.38g												
칼륨	199mg												
알레르겐 주의 성분	견과류, 대두												

인증

[선택 인증]

• JAS

- JAS인증은 일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한 인증으로, 유기식품(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임산물, 특정 육가공품, 양식어류 등에 대한 세부 규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식품의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획득 가능함. 그러나 JAS 인증 미취득 시 ‘유기’, ‘오가닉’ 표시 및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인증명	JAS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강제유무	권장(유기농 제품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생산 일정 관리 담당자의 성명·약력 등	
비용	1,200~2,000만 원	
소요기간	8주 이상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 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에서 해당 인증을 관리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에서 HACCP 인증 취득여부를 등록신청업체 필수요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인증명	HACCP(품질안전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후생노동성 등록 인증기관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수산식품 가공시설 HACCP 인증 신청서 등 양식에 맞는 서류	
비용	기본 심사 수수료 약 106만 원, 품목, 일수마다 추가 요금 약 20만 원, 그 외 출장비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JGAP

- JGAP 인증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글로벌 GAP와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본 내에서만 4,500개의 농장에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제기준 Global GAP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됨.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 안전성, 환경보전형 농업, 노동의 안전을 배려한 농장 또는 단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명	JGAP 인증(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登録番号 123456789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JGAP 협회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생산자명단, 필지명단, 인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비용	품목당 128,000엔 이상	
소요기간	약 4주(사전 준비기간 제외)	
절차	사전 준비 → 심사 신청 → 심사 진행(2~3일) → 판정(심사 후 4주 이내) → JGAP 인증서 발급(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은 고품질 식품을 범위를 넓혀 씹거나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식품 기준으로, 식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점도를 높인 식품은 유형과 정도에 따라 라벨을 구분함. 젤리, 푸딩, 죽 형태의 부드러운 식품이나 단백질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기능성 식품에 적용할 수 있음. 식품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7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마크 색을 달리함

인증명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일케어 인증신청서(회사명, 상품상태, 연간 생산예정량 등) 라벨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 라벨: 자기 적합선언 및 상품 소개 URL - 황색 라벨: 저지방식품에 대한 JAS 규격 인증서 사본 - 적색 라벨: 특별용도식품 표시 허가서 사본 	
비용	없음(온라인 등록)	
소요기간	2개월 이내	
절차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신청 → 신청확인 및 서류 적부심사 → 인증마크 발급(유효기간 무기한)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2년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35건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건수는 98건으로 집계됨. 사유별로는 2022년 기준 위생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0~22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성분 부적합	9	4	8	21
위생	7	12	20	39
서류미비	0	0	0	0
잔류농약 검출	5	21	5	31
기타	0	5	2	7
합계	21	42	35	98

2022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2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한 개 문제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유가 확인된 복합 문제사례를 포함하면 총 36건으로, 위생 21건, 성분 부적합 8건, 잔류농약 검출 5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되었음

2022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0	1	0	1	2	0	1	3	0	0	0	0	8
위생	5	3	0	4	0	1	1	0	0	2	4	1	21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0	0	0	2	0	0	1	0	0	0	2	0	5
기타	0	1	0	0	1	0	0	0	0	0	0	0	2
합계	5	5	0	7	3	1	3	3	0	2	6	1	36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부적합	이산화황 검출	3
	산가 부적합	1
	폴리에틸렌옥사이드 검출	1
	아세트산에틸 검출	1
	카민산알루미늄레이크 검출	1
	마비성 패독 검출	1
위생	대장균 양성	7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 검출	10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 양성	3
	장염 비브리오 검출	1
잔류농약 검출	헥사코나졸 검출	2
	테트라코나졸 검출	1
	에토펜프로스 검출	1
	테부펜피라드 검출	1
기타	성분규격 부적합 판정	2
합계		36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음료	8	22.2	대장균 양성
	기타 조제 농산품	6	16.7	세균수 초과
	채소류	5	13.9	잔류농약 검출
	면류	3	8.3	미생물 검출 등
	과자류	3	8.3	이산화황 검출
	커피류	2	5.6	대장균 양성
	당류	1	2.8	성분규격 부적합
	식물성유지	1	2.8	미생물 양성
소 계		29	80.6	
수산물	연체동물	4	11.1	세균수 초과
	갑각류	2	5.6	세균수 초과
	어류	1	2.8	대장균 양성
소 계		7	19.5	
총 합 계		36	100.0	

No.	제목	인삼 가공식품의 일본 수입 가능 여부 확인 어려움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인삼 가공식품
			유형*	수입통관
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으로 수입되는 인삼가공제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속이 필요하며, 사전검사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후생노동성에 "사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일본어로 작성하고, 성분비율표, 제조공정표, 시험성적서 등의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또한, 한국과 일본의 인삼 성분에 대한 농약기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기 전 일본 검역소에서 인증한 한국 내 검사 기관에서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출용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음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성분이나 수입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여러 루트를 거쳐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기타		<p>※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 활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수출국의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일본 수입검역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함 (단, 수송 중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세균, 곰팡이 독소 관련 항목은 제외) <p>▶ 일본 후생노동성 지정_수출국 공적검사기관 목록</p> <p>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yunyu_kanshi/index_00019.html</p>		

No.	제목	일본어로 된 라벨 준비의 어려움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차류
			유형*	TBT
2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으로 수출 시,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일본어로 된 라벨을 준비해야 함 일본의 중요한 식품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기한 표시(상미 기한, 소비기한) - 영양성분 표시(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포장된 가공식품에는 명칭,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 내용량, 기한 표시, 보관방법, 제조처, 영양성분 등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로 된 라벨을 준비해야 하므로 통번역의 어려움과 라벨 제반 사항 준비에 애로를 겪음 		
기타		<p>※ 2022년 개정된 라벨링 규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4월, 식품표시에서 인공, 합성의 용어 사용이 전격 금지됨 - 2022년 10월, 일본 농림수산성은 채식주의자와 비건 대상 가공식품의 생산 및 표기 기준인 '채식주의자 및 비건에 적합한 가공식품'을 시행을 발표함 - 2022년 10월,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라벨링 기준을 규정한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이 시행됨 - 2022년 10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첨가물 및 농약 성분의 규격 기준 개정사항의 종합 공고를 발표함 		

No.			해당국가	일본
3	제목	유기가공식품 라벨링 규정 준수	관련품목	유기가공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될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을 발표함 • 유기가공식품은 식염 및 물을 제외한 원재료와 첨가물의 총량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이들의 가공품의 첨가 비율이 5% 이하인 것을 의미함 •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관리 요건 : 제품 내 비유기성분(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 포함) 함유량은 5%를 초과할 수 없음 - 라벨링 요건 : 명칭은 “유기농 xx” 또는 “xx(유기농)” 또는 “오가닉 xx” 또는 “xx(오가닉)”로 기재해야 함 - 전환 기간에 유기농산물 또는 이를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은 명칭의 앞 또는 뒤에 ‘전환기간 중’으로 기재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는 유기가공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유기가공식품 관련 라벨링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라벨링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기타	<p>※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의 원문 규정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attach/pdf/kokujikaisei-257.pdf</p>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차 / 음료류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수입 시 검사항목, 공장 등록 사항 등
- 관세율 등 통관 검역 시 주의사항
- 성분적정성과 표기안

조사 결과

- 관세 분류 조사
 - 문의처 : 도쿄세관 및 오사카세관 각기 확인한 결과임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류	제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고
				WTO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	-	2202.99.200	16%	
				9.6%	
-	건조야채 - 무	-	0712.90.040	15%	
				9%	

- 한국은 WTO 가맹국임에 따라 WTO 협정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만약 WTO 협정세율보다 잠정관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잠정세율이 적용됨
- 세관에 상담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상정되는 관세율은 상기 표와 같음. 현재, 귀사가 수출을 예정하시는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세율 확정을 위해서는 수입업체 등을 통해 일본 세관에 정식 문서로 회신되는 사전교시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함

- 식품 규격 기준 분류

- 관련 검역소 등에 문의한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자문 주신 귀사의 제품에 대한 식품 규격은 수국무차, 현미무차는 청량음료수로, 로스팅무차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 수입 시 식품 검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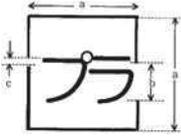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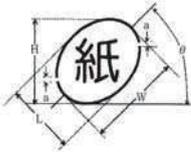
- 검역소에서는 사전 상담 시 검사항목을 알려주지 않으며, 실제 수입신고 시에 해당 성분표 및 가공 공정 등을 검토 후 검사항목을 지도하고 있어 사전에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일본에 처음 수입할 경우에는 자주검사라는 검사가 부과되어 반드시 하기 검사항목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됨으로 사전에 한국 제조단계에서 검증해 보실 것을 권함
 - * 음용 시 사용되는 배수(倍數)의 물로 용해한 액이 '식품, 첨가물등의 규격기준' 중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 개별 규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비소, 납 및 카드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또한 주석의 함유량은 15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됨
 - * 유산균을 가하지 않은 청량음료수는 대장균군이 음성이고 세균수가 검체 1g 당 3,000 이하 이어야 함
 - * 검역소에서는 청량음료수 제품의 경우 통상 아래와 같은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 혼탁, 침전물, 비소, 납, 대장균군, 수크랄로스 등

- 수입 시 제출서류

- 인보이스, 패키리스트, 원재료 배합표 및 제조공정표 및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등
-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일본후생성이 인증한 한국검사기관 한정, 일본검사기관 판단하에 검사성적서상 검사항목 중 필수검사항목이 없을 경우 추가검사 진행, 대장균 등 세균류 검사항목은 일본에서 진행해야 함)
- 제품 유형으로 판단 시 일본 도착 후 검역소에서 아플라톡신 검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사전에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통해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제품관리 확인이 필요
- 제품에 따라 추가서류 및 서류의 원본이 필요할 경우가 있음
 - *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함

• 리사이클 마크 표기

- 용기가 병인 경우 리사이클 마크는 불요하며, 뚜껑이 플라스틱인 경우 마크 표기가 필요함
- 플라스틱 마크의 한 변의 높이 및 종이 마크의 높이는 6m 이상이어야 함

	
<p>제품 포장 플라스틱 경우</p>	<p>제품 외장 종이일 경우</p>

• 검역 통관 시 주의사항

- 성분배합표 및 가공공정에 따라 일본 검역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첫 회 수입 시 및 년 1회 빈도로 식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후에 통관이 가능하므로, 대량으로 수출하기 전 사전에 소량의 샘플 통관을 실시함으로 일본 통관 가능여부를 판정한 후 본 수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제품의 검사 실시 유무 및 검사 항목 등에 대한 확인은 일본수출 선적 일정이 결정된 후 도착항 관할 검역소에「사전심사제도」(화물도착 7일 전부터 신청 가능)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함
- 공장 사전 등록제 : 일본의 경우 공장 사전등록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어, 수입 시 검역에 의해 수입 가능 여부 판단

자문 결론

- 향후 수출이 결정되어 라벨링을 포함한 패키지디자인 제작이 필요하신 경우 대일 수출 제품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전문기관이 자문 예정
- 현지 수입업체가 결정되시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현지화 사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 식품검사 시 비용 지원, 패키지 포장디자인, 현지 마케팅 조사 등의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음. 단, 반드시 수입업체에서 신청해주셔야 하며 도쿄지사로 직접 문의토록 요청함

※ aT도쿄지사 현지화 사업 안내 사이트(<https://www.atcenter.or.jp/katis>)

2. 치킨 너겟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가금육의 일본 식품규격
- 가금육의 검역조건 및 방법
- 수출 시 검역·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출제품 등록 및 수출 전반사항

자문결과

- 금번에 상담하신 닭고기 너겟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일 가열가금육 협약 조건에 의해 제조공장이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사전에 위생검역 상태를 승인받아 일본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함
- 신청 승인 절차
 - 일본 정부에 제출할 공장 도면, 제조공정도 등의 기본 서류(일본어 또는 영문)를 구비하여 한국 검역 검사 본부에 신청해야 함
 - 검역 검사 본부에서는 기본 구비 서류 검토 후 일본 정부에 등록 요청
 - 일본 정부 농림수산성에서는 해당 서류 검토 후 검역관을 한국 공장에 파견하여 현장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단, 코로나로 인해 파견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별도 방법으로 검토할 수도 있음
 - 승인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급적 신속히 서류 준비 등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함
- 통관 검역 시 검토 사항
 - 금번과 같은 축산제품의 경우 통관 시 일본 동물 검역소에 해당 식품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한국 축산검역당국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이 필요함
 - 후생성 검역소에도 동물 검역소에 제출한 동물검역증(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함
 - 포지티브리스트(PLS) 제도에 의해 식품 중에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 사료 첨가물 및 동물 의약품 등의 성분이 잔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착색료, 발색제(아초산염) 등의 식품 첨가물은 사용 불가함으로 주의 요망
 - 실제 수출이 확정되었을 경우 제품의 성분적정성 판단 및 수입자 표기 등에 대한 서비스를 무료 지원하는 제도의 aT 현지화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람